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진행상황 통지 의무〉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16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7.
3. 회 부 일 : 2025. 11.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조사인 권리 보호와 심사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 조사 통지의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고시에 따라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이내에 피조사인과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고시만으로는 강제력이 부족해 피조사인 등 사업자가 조사 과정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 및 방법 등의 근거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피조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8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월마다 조사 진행 상황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85조의2(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 <u>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마다 조사 진행 상황을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 현행법 제80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고를 통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81조에서 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¹⁾

1)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1조제2항²⁾과 제101조³⁾에 근거하여 회의 및 그 운영과 사건의 조사·심사, 심의·결정·의결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함))을 두고 있음.

- 사건절차규칙 제15조는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사건심사에 대한 착수보고를 한 경우 조사목적의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제122조에 따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④ 조사공무원은 제59조제1항또는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제3항에 따른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공무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들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 ⑦ 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의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 ⑨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조사목적·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⑩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 2) 제71조(조직에 관한 규정)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3) 제101조(사건처리절차 등) 이 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15일 이내에 피조사인과 신고인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신고인에게는 착수보고 후 3개월 이내에, 피조사인에게는 착수보고 후 3개월마다 조사의 진행 상황을 신고인과 피조사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⁴⁾⁵⁾

<사건절차규칙의 통지의무>

구분	통지 시기	통지 대상
사건심사 착수보고	15일 이내	신고인, 피조사인
조사의 진행 상황	3개월 이내	신고인
	매 3개월 마다	피조사인

□ 개정안은 사건절차규칙 제15조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은 사건심사 착수에 대한 통지의무는 두지 아니한다는 점, 신고인을 제외한 피조사인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
- 4) 제15조(심사절차의 개시) ④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신고내용 또는 직권인지 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한 경우 이를 사건심사착수보고 후 15일 이내에 피조사인 및 신고인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내에 조사진행 상황을 신고인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마다 조사진행 상황을 피조사인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5)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과 피조사인에게 연간 수천건을 문자메시지 형식으로 통지하고 있음.

에서 사건절차규칙과 차이를 보임.

□ 개정안은 법률에 직접 사건 절차에 대한 통지의무를 둠으로써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여 피조사자가 조사 과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건 처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보다 강화하여 조사의 장기화에 따른 피조사자의 불안을 줄일 수 있고, 현행 고시에 따라 운용 중인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재정적·행정적·기술적 부담도 크지 않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 다만, 조사 경과에 대한 통지는 피조사자의 권익 증진에 주된 의의가 있는데, 이를 행정청의 법적 의무로 규율할지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행한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처분을 취소한 판례⁶⁾가 다수 있어, 개정안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피조사자에 대한 통지를 법정 의무로 규정할 경우 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봄.

6) 대법원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위반에 대하여는 대부분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대법원 2016두41811 등), 행정조사 시 사전통지 의무와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의무를 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와 제24조에 대하여는 조사의 밀행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절차적 하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음(서울고등법원 2018누68706 등).

□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는 절차와 관련한 기술적 사항이므로 법률보다는 현행처럼 고시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⁷⁾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5항⁸⁾에서도 통지의무⁹⁾와 같은 절차적 사항을 고시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9

-
- 7)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8)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9)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통지의무는 현장조사나 처분 또는 의견제출을 위한 사전통지, 의결서 통지 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처럼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의무는 두고 있지 않음.